울산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가단9124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C

변론 종결2023. 7. 6.

판결 선고2023. 8. 17.

주 문

1. 피고는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04,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골재판매업, 장비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D는 2022. 5. 26. 아래와 같이 원고가 2022. 5. 26.부터 2023. 5. 31.까지 D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위 공급계약상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레미콘	25-27-150	m^3	단가계약	87,000원	1. 부가가치세 별도가격임2. 가격표기준 75.5% 단가임(원, 십단위 절사)3. 규격, 수량 변동 가능함
상기 외 규격 납품시 적용 가격표 기준동일단가율(%) 적용					
2. (단가) 상품단가에 영향을 미칠 재료비, 운반비 등의 변동이 있을시 공급자는 그 시점으로부터 미출하분에 대해서는 그 인상폭만큼 단가를 인상 조정한다.					
…(중략)…					
6. (대금지불) 상품대금은 계약(주문)자와 연대보증인이 기왕 또는 장래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공급자에게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상품대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주문)자가 가지는 기한의 이익은 상실한다.					
7. (적용) 수량, 규격의 변동에 관하여 별도 약정 없이 본 계약을 적용한다(표준단가표 적용).					

다. 원고는 2022. 5. 27.부터 2022. 6. 2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량, 공급가액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2022. 5. 27.	25-27-150	87,000원	324	28,188,000원
2022. 5. 28.	25-18-150	75,700원	45	3,406,500원
2022. 6. 1.	25-24-150	84,200원	13	1,094,600원
2022. 6. 20.	25-27-150	87,000원	59	5,133,000원
합계	37,822,100원			

라. 원고는 2022. 10. 14. 이 법원에 피고와 D를 상대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울산지방법원 2022차279호), 2022. 10. 14.자로 그에 따른 지급명령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였으나, D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41,604,310원(= 37,822,100원 × 110%)(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기망 내지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는 2022. 7. 5.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D에 총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로써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일자에 D에 2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가 피고 송금의 위 돈으로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실제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는 피고로부터 위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원고 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1,604,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현정

1) '2022년 레미콘 표준단가표'상 각 해당 규격별 레미콘 가격의 7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